

일시 : 2017.7.29.(토) 14:30분-16-23분

장소 : 전남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국민생활관 1층 민방위 교육장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2017. 7. 29. (토)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목 차

가. 보고 사항1

- 1) 전차 총회 초록 1

나. 심의 사항2

-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 1차 및 2차계고로 인한 육사테니스코트 원상복구의 건 2

※ 별첨. 구리시 1차 및 2차 계고장

다. 기타 사항3

가. 보고 안건

1) 전차 총회 초록

- 지난 2017년 2월 11일(토) 대전 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에서 재적대의원 24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보고안건으로 2016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보고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을 진행하였고,
- 심의안건으로는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 기타사항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뒤 12시 4분에 폐회하였습니다.

나. 심 의 안 건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상복구 1차 및 2차 계고로 인한 육사코트 원상복구의 건

가. 의결주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및 2차 계고 접수로 인한 육사테니스코트 원상복구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협회 정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구리시 도시과로부터 육사테니스코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도시과-7692 / 2017.6.5) 및 2차 (도시과-8862 / 2017.6.28) 계고가 유첨과 같이 접수됨에 따라 2017년 제2차 전체이사회 서면결의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함.

※ 관련규정 제 8 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내 용

구리시로부터 접수된 육사테니스코트 개발제한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개특법 제31조와 제32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장”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2항”에 의거 강제집행될 수 있으며, “개특법 제30조2”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가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육사테니스코트 가림막시

설의 원상복구(철거)에 대하여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긴급한 안건으로 제2차 전체이사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였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받아 임시총회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함.

* 유첨 : 구리시 1차 계고 문서 도시과-제7692호 (2017.6.5)

구리시 2차 계고 문서 도시과-제8862호 (2017.6.28)

라. 의결사항

대의원을 의견을 수렴하여 무기명 투표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진행하여 3안이 채택됨.

- 1안. 자진철거 (시간벌어 미디어월과 협의) 5표
- 2안. 강제철거시까지 시간을 벌자
- 3안. 오늘 위 2가지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10표

다. 기타 토의

기타 토의 사항으로는 협회 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과 미디어월 소송에 따른 압류 현황 및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 뒤 폐회함.